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·운영 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335호
의결	2004.12.23
년월일	(제116회)

제출년월일 2004. 12. 15. 제 출 자 행정복지위원장

□ 제안이유

○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푸른부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설사무국의 위치가 불합리하여 조정 · 보완하려는 사항임

□ 주요골자

○ 사무국의 위치를 부청시청내에서 부천시 관내로 변경함. (안 제8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·운영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설치·운영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중 "부천시청 내에"를 "부천시 관내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무국) ①(생 략)	제8조(사무국) ①(현행과 같음)
②사무국은 <u>부천시청내에</u> 설치한다.	②사무국은 <u>부천시 관내에</u>
③~④(생 략)	③~④(현행과 같음)